

## 농어촌정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제86조의2제2항을 위반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제1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### 가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주 소	위반 장소	위반내용	반송사유	과태료 금액
김*하	제주시 구좌읍 상도로*	제주시 구좌읍 상도로*	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	폐문부재	200,000원

나. 공시송달 기간 : 2020. 11. 18. ~ 2020. 12. 04.

다.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, 농어촌정비법 제132조제1항제2의2호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기타 문의사항은 구좌읍사무소(☎064-728-77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18.

구 좌 읍

